

(별표 3)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일반원칙

가. 핵심가치의 보호

- 1) 국가유산의 물적 특성을 비롯하여 핵심가치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적극 도모한다.
- 2) 핵심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보존관리계획의 고려

-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다. 개발정도의 고려

- 1)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국가유산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 국가유산 주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거나, 국가유산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경우

- 조망권 확보 등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2)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국가유산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국가유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 3)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 개발이 고도로 진행된 경우

- 국가유산 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양각을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국가유산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유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라.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2) 토지이용계획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유산 주변 경관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극 고려한다.
- 3) 특히,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마. 허용기준 검토범위의 설정

- 1)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 및 주변환경,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여 구역별 검토 범위를 설정한다.
- 3) 유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유산은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확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구역별 검토범위를 설정한다.
- 4) 매장유산 분포가능 여부를 확인(유적분포지도, GIS 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2. 공통검토기준

가. 경관관리 중점지표의 고려(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중점지표	고려사항
장소성 (원위치,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이 지니는 원형(原形)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본지표로서 ‘원 위치 여부’와 ‘입지여건’으로 구분한다. ◦ 이전된 국가유산에 대한 허용기준은 당해 국가유산 보호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국가유산의 입지여건은 크게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 광역적으로는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을 반영하고, 지역적으로는 국가유산의 자연환경 및 인문학적 특성(도심형, 농촌형, 산림형, 수변형 등)과 지형적 특성(구릉형, 평지형, 계곡형, 매장형 등)이 국가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협소하게 지정하거나 인접 또는 근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왜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건축물·시설물의 조화 및 대비를 통해 국가유산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규모의 국가유산(보호)구역의 확보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이격거리, 규모(높이, 면적 등) 등의 기준설정을 통해 대규모화를 제한한다.
조망성 (진입부,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조망점으로부터 정지된 상태 또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국가유산나 특정장소를 바라보며 가지는 시각적 인상’을 의미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진입부’와 ‘내·외부’로 구분한다. ◦ 진입부의 조망성은 국가유산으로의 진입 시 노출되는 진입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양각(仰角)과 부각(俯角)의 개념을 차등 적용한다. ◦ 내·외부의 조망성은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 외부로의 조망(외부경관)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의 조망(내부경관)으로 구분한다. ◦ 조망점 및 조망대상의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특성 및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한다. - 국가유산(조망점)으로부터 외부(조망대상)로의 조망범위를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로 조망할 수 있는 핵심 지점(포인트) 또는 구간으로 정한다. - 외부(조망점)에서 국가유산(조망대상)을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국가유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라지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 조망축 및 조망권 확보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황조사 시 과학적 경관분석기법(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유형별 조망점 및 조망대상 선정대상은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조망 시 부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고, 마감은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도록 한다.
마루선 (국가유산 배경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의 지붕선(용마루)과 배후산지의 산등성이(산마루) 등이 형성하는 형태의 조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입부 및 국가유산 경내 등에서 후면을 바라볼 때, 국가유산의 배경에 위치하는 건축물·시설물로 인해 국가유산의 경관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따라서, 배경보존의 특성이 중요한 국가유산에 한해 배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 및 입면적 등이 입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 보존과 더불어 국가유산(보호)구역 주변으로

(국가유산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생태
환경적 특성
등)

해당 국가유산과 관계된 잔존 유물 및 유구 또는 매장유산 출토가능지가 분포되어 있거나, 풍수(風水)나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맥락을 보존한다.

- 성곽 및 분묘 등 지정구역을 벗어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잔존 유물 및 유구 또는 매장유산의 출토가능성이 높은 국가유산의 경우, 일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 풍수지리(궁궐, 관아·객사, 왕릉 등) 및 민속신앙(노거수, 장승 등) 등 지역의 인문학적 특성과 관계된 국가유산의 경우, 좌청룡우백호, 안산, 조산, 주산, 명당수 등에 해당하는 지형 및 수계와 인접마을 등을 일체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한편, 해당 국가유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지(產地) 및 운송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고려한다.
 - * 예) 도요지 : 공방터, 운송로, 재료(땃감·흙·물) 공급지 등
- 천연기념물의 경우 당해 자연유산의 서식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식생환경이 형성되어 있거나, 지질적 특성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일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나.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고려

구분		행위정의(보존 영향성)	검토대상(행위)(배출원인)
소음		◦소음의 발생으로 인해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소음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의 운영 및 이용 ◦교통운송(비행기·철도·자동차 등) ◦각종행사 등
진동		◦진동의 발생으로 인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지질·광물류)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의 운영 및 이용 ◦교통운송(비행기·철도·자동차 등) ◦각종행사 등
대기오염	먼지	◦먼지의 적층 및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부식 및 변색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먼지(미세/초미세)를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먼지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운영 및 이용 ◦각종행사 등
	대기오염물질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부식 및 변색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운영 및 이용 ◦각종행사 등
	악취	◦악취 및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악취발생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악취발생시설(악취방지법)의 운영 및 이용 ◦각종행사 등
수질오염		◦각종 오염원에 의해 수중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매장유산의 훼손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폐수배출시설(수질수생태계법)의 운영 및 이용 ◦각종행사 등
토양오염		◦각종 폐기물에 의해 지표·지중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을 포함한 매장유산의 훼손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토양오염물질(토양환경보전법)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처리하는 시설·장치의 운영 및 이용 ◦각종행사 등
화학물질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부식 및 변색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각종행사 등
빛공해		◦태양열집열판의 설치 등으로 인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야간조명으로 인해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빛공해 시설 또는 행위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명기구(빛공해방지법)의 설치 및 운영 ◦각종행사 등
형질변경	굴착	◦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저해 및 원지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의 일체적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리적 행위	◦지질조사용 굴착 ◦지하수개발을 위한 굴착 ◦암반수개발을 위한 굴착 ◦굴착후 굴착공 불량 관리 행위
	절토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준설을 하는 경우 ◦사면의 안정성 확보차원의 구배완화를 위한 절토
	성토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준설투기를 하는 경우 ◦사면의 안정성확보차원의 구배완화를 위한 성토

1) 문화유산 주변

구 분	검토기준	
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동에 의해 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의장재·외부마감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대상 문화유산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기타 건조물, 선사유적, 사지, 고분군·지석묘, 가마터, 기타 유적지 등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및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소음·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먼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지에 의한 표면오염, 기타 대기오염물질과 화학반응에 의한 변색 및 부식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대상 문화유산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기타 건조물 등
약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취발생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약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약취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정주환경 및 탐방환경의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수질·토양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면 아래 잔존 유물·유구 등의 매장유산이 수질오염·토양오염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수질·토양오염에 의한 약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정주환경 및 탐방환경의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문화유산	선사유적, 사지, 고분군·지석묘, 가마터, 기타유적지 등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국가유산 훼손과 환경오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빛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 발생원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이격 설치하여 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 	
	대상 문화유산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기타 건조물 등
형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보호)구역의 인접 또는 연속된 지형에서의 굴착 및 땅깍기·흙쌓기에 의한 지형붕괴를 비롯한 비탈면 발생, 세굴, 배부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지형변형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비탈면 안정 해석에 따른 안전한 기울기 결정, 소단 및 배수로 설치 등을 계획하여 구조안정을 확보하고, 사면녹화공법 등을 통해 구조안정을 도모한다. 	
	대상 문화유산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민속마을, 사지 등
	검토사항	문화유산의 당시 규모 및 배치형태 등의 보존을 중시하는 문화유산은 풍수 등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굴착 및 땅깍기·흙쌓기에 의한 지형변형을 최소화 한다.

2) 자연유산 주변

구 분	검토기준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에 의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및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소음·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0 367 619 416">대상자연유산</th> <th data-bbox="619 367 1412 416">검토사항</th> </tr> </thead> </table>	대상자연유산	검토사항
	대상자연유산	검토사항	
	<p>동물종, 번식지, 도래지 등</p>	<p>소음·진동에 의한 질병, 거주이탈 등이 우려되는 동물종 및 서식지 등은 소음·진동이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동물종의 산란, 번식 등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p>	
<p>노거수, 자생지, 군락 등</p>	<p>진동에 의한 노거수의 고사 및 고사, 수림지의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 뿌리활착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p>		
<p>지질·동굴, 화석산지 등</p>	<p>진동에 의해 균열, 표면노출 등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질·광물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p>		
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지, 분진 등의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노거수 등의 이파리 표면오염 및 이에 따른 성장지연, 동물종의 호흡기 질환 및 이에 따른 거주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지질·광물의 경우,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표면오염 및 부식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개방동굴의 경우에는 동굴로의 대기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한다. 		
악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발생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동물종의 질병유발 및 식물종의 생리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악취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악취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수질·토양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식물의 생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질 및 토양오염은 사전에 예방하여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한다.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는 지질·광물의 훼손(오염)의 우려가 있는 수계와 토양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동굴의 수계 및 내부 오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한한다.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자연유산의 훼손 및 환경오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을 관리한다. 		
빛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빛에 의한 동물종의 서식환경 변화 및 이에 따라 거주이탈 등의 피해, 식물종의 성장장애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 발생원 설치를 지양하여 온도상승에 의한 동물·식물의 서식환경 변화 및 화재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예방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해당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 		
형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은 제한하여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동물·식물의 생태환경과 지질·광물의 지질적 특성이 연속되는 지형에 대한 굴착 및 땅깍기·흙쌓기는 제한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0 1655 619 1704">대상자연유산</th> <th data-bbox="619 1655 1412 1704">검토사항</th> </tr> </thead> </table>	대상자연유산	검토사항
	대상자연유산	검토사항	
	<p>노거수, 자생지, 군락, 명승 등</p>	<p>복토에 의해 수목의 밑둥이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답압에 의해 토양의 투수성과 통기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굴착 및 땅깍기·흙쌓기 등에 의해 뿌리의 노출, 절단 등 뿌리생육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p>	
<p>동물종, 번식지, 도래지 등</p>	<p>굴착 및 땅깍기·흙쌓기 등의 지형변형에 의한 동물이동공간 훼손 방지를 위해 동물 종류 및 이동특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p>		
<p>지질·동굴, 화석산지 등</p>	<p>굴착 및 땅깍기·흙쌓기 등에 의해 지표면 아래 지질·동굴, 화석산지의 노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한다.</p>		

다. 허용기준 작성방식

- 1)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거나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국가유산이 위치한 경우 고도제한 구역 등 규제범위를 최소화 한다
- 2) 임야, 능선, 하천, 도로의 이면(배면)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당해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절대농지, 그린벨트 등 타 법령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등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3)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 적용(동일하게)할 수 있다.
- 4)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구역에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를 차등 적용할 경우, 그 경계설정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다.
 -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축물 등
- 5) 국가유산(궁궐, 관아 등) 경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역경계선을 도면에 표기하고,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 6)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7) 국가유산 및 경관 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향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편입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8)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원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심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범위라도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 9)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라. 특기사항

- 1)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주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도모한다.

3. 국가유산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경관 검토기준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가유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형분류 기준(총26개의 기본 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기준 마련대상 국가유산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	주요 유형	경관 검토기준		
문화유산	국보·보물·사적·중요민속유산	유형문화유산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서원·향교	서원, 향교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사찰	사찰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성(평지성·산지성)	평지성, 산지성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능·원·묘	능, 원, 묘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사우	사우, 제사터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전통가옥	가옥, 누정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민속마을	마을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탑·비·불상	탑, 비, 불상, 석등, 석조, 대좌, 부도, 당간, 문, 종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일체성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생활유적, 공원	장소성(원위치·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기타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소, 천문, 풍기대	왜소화, 일체성			
		매장문화유산	선사유적(주거지·패총)	주거지, 패총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사지	사지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내·외부), 일체성		
			가마터	가마터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자연유산	명승·천연기념물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동물·식물	노거수	노거수	왜소화, 일체성
					수림지·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물종	왜소화, 일체성
				지질·광물	지질·동굴	지질, 동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일체성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나.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 검토기준

(1) 궁궐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군으로 상징성·중심성·정면성이 강조된 공간 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정사(政事) 목적의 건물을 전면에 배치하고, 생활건축을 후면에 배치하는 전조후침(前朝後寢) 형식이 일반적이고,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정무·생활·정원공간의 동선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도심에 위치하는 면단위 국가유산으로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궐은 과거 왕조시대 도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오늘날 개발이 고도로 진행된 도심 내 평지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을 고려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궐은 일반적으로 도심 내 평지에 위치하고,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있음에 따라 상징성·중심성·정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주 진입동선을 주요 조망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정문, 최남단 남문, 정전 월대 등)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으로의 조망권(좌·우 각 30°, 60° 이내)을 중점 관리한다. ○ 내부 조망점은 중심축선을 따라 대칭적이고 전면경관의 위엄을 중시하는 궁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전(전면 월대), 중심축선 상의 주요 건축물(편전, 내전, 후원 등)의 전면 등으로 설정한다.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궁궐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 정문 또는 정전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 궁장(宮牆) 주변에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수림선과 이루는 각도를 고려하여 조망구간을 관리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궐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정전 및 정문 중앙 등)에서 국가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궁궐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후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 변화를 최소화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궐은 도읍지를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도성과 각종 행정관청, 상업·주거지역 등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던 당시의 입지특성을 고려한다. ○ 특히,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예: 경희궁지 북동쪽 궁장지역 등) ○ 궁궐의 정면성과 대칭성,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성을 인식하여 경역을 명확히 하고, 배산임수 등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2) 관아 · 객사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아 · 객사는 지방행정의 중심공간으로 궁궐과 유사한 배치특성을 보이며 상징성 · 중심성 · 정면성이 강조된 공간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면단위 국가유산으로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 · 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검토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아 · 객사는 대체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 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을 고려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마을 내 평지에 위치하고, 도로에 면하여 있음에 따라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외삼문, 홍살문 등)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내 ·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아 · 객사는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 또는 바다 등을 바라보고 입지함에 따라 내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 또는 바다 등이 조망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예: 거제현 관아 등) 내부 조망점은 동헌의 정청, 객사, 삼문 등의 전면으로 설정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관아 · 객사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헌 또는 객사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아 · 객사의 내 · 외부 주요 조망점(동헌, 객사, 삼문 등)에서 국가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국가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관아 · 객사의 마루선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후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의 변화를 최소화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아 · 객사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읍성과 각종 행정관청, 상업 · 주거지역 등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던 당시의 입지특성을 고려한다. 특히,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관아 · 객사의 중심성, 정면성,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역을 명확히 하고, 배산임수 등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다. 	

(3) 서원 · 향교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향교는 전통적 교육기관으로서 상징성과 대칭성, 개방성을 중시하는 공간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적 특성을 지닌다. ○ 서원 · 향교는 자연과 마주보는 조망을 중시하고, 배향 · 강학 · 생활공간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한다. ○ 일반적으로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구릉지 또는 평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닌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 · 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단, 마을 및 평지에 위치한 서원, 향교에 한해 왜소화를 추가 고려한다. 	
세부검토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향교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상징적인 장소 또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 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왜소화	○ 서원 · 향교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왜소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마을이나 평지에 위치한 서원 · 향교의 경우에는 인접하여 건축물이 위치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향교는 상징성 · 대칭성 ·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외삼문, 홍살문 등)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구릉지에 위치한 서원 · 향교는 양각과 부각의 적용 등 표고차를 고려하고, 평지에 위치한 경우는 외삼문 등의 높이를 고려한 통경축을 확보한다. ○ 주 진입부 조망을 위해 교차로, 광장 등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홍살문 등의 윤곽선이 부각되도록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내 ·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향교는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입지하고 있어 강당 및 명륜당 등 주요 건축물에서 안산(案山)과 하천, 경지 등이 조망 될 수 있도록 조망축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특히, 강당 및 명륜당 등의 문루에 올라 전면을 조망함으로써 체험되는 조망경관은 서원 · 향교 건축의 주요한 특성으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나, 주변 지역의 개발(도시화)정도를 고려한다. ○ 서원 · 향교의 내부 조망점은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 등으로 설정하고, 외부 조망점은 배경에 위치한 임야와 함께 서원 · 향교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단,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성전 또는 명륜당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설정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향교의 내 · 외부 주요 조망점(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등)에서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국가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일반적으로 배산(背山)구조를 취하고 있어 후면 임야(수림대)의 마루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경관 유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는 경우는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과거의 규모 및 배치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대칭성과 위계를 형성하는 배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서원 · 향교의 경역을 명확히 하여 가치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 특히, 능선 · 수계 · 임야 · 농지 · 옛길 등 자연 및 인문환경이 어우러졌던 당시의 입지 특성과 함께, 배산임수의 지형적 여건과 풍수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4) 사찰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은 중심성·정면성이 중요한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요소에 위요되어 조화된 역사문화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내 구릉지 및 계곡에 위치하여 수림에 둘러싸인 입지특성과 배치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은 대체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산지나 구릉지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은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광장 및 주차장 등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일주문 또는 사역의 시작부임을 알리는 표식물을 연결하는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시각적으로 일주문(一柱門)에서 불전(佛殿)까지 배열되는 점층 구조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조망점을 설정하고, 산지사찰은 진입부와의 표고차를, 평지사찰은 일주문 등 주요 조망점의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기준을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의 배치특성(중심성, 정면성)을 고려하여 사찰의 경역을 명확히 하고, 잔존 유물 및 유구, 매장유산 출토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찰은 일반적으로 풍수적 관계를 중시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 산지형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을 둘러싼 산지의 위요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편, 능선이면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평지형 사찰의 경우에는 대부분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어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과거의 규모 및 배치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5) 성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은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견고하게 마련된 군사시설로서 중심성·조망성이 강조된 공간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 성은 평지에 축성된 평지성, 산지에 축성된 산지성 그리고 평지와 산지의 혼합형인 평산성 등으로 구분되며, 면단위 문화유산의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평지성 및 평산성은 마루선을 추가로 검토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은 일반적으로 과거 도시의 골격을 이루고 오늘날 도시 발달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을 고려한다. 산림지역에 위치하는 산지성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남문 등 주요 문루는 성 내부로의 진입을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광장 및 교차로 등에서 남문 등 주요 문루를 연결하는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은 적의 동태 및 성 안팎을 살피기 위해 망루 및 장대 등을 설치하는 조망성을 중시하는 시설로, 성 내·외부 주요 조망점과 조망권역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지형적으로 방어가 유리한 산지에 축성된 산지성과 달리, 배산임수가 고려되어 축성된 평지성은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입지함에 따라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이 조망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내부 조망점은 일반적으로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과 주요 문루로 설정하고, 특별히 조망을 위해 설치한 망루, 성내 중심 객사나 동헌, 대로변을 추가 검토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문루, 망루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산지성의 경우, 외부 조망점에서 성곽의 윤곽선에 대한 조망을 고려하고, 필요시 일정 구간의 간벌(間伐)을 고려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남문, 망루, 객사 등)에서 국가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문화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성곽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성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평지성의 경우에는 후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 변화를 최소화한다. 산지성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차폐되거나 그 주변이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유산 주변경관이 양호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마루선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은 다양한 기능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성곽 및 관련 시설(해자, 연지, 관청 등)을 비롯하여 민가, 옛길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다.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는 경우는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과거 건물의 규모·배치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6) 능·원·묘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원·묘는 조선왕실의 위계에 따라 구분된 무덤으로 성역으로서의 상징성과 풍수적 관계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풍수사상에 따라 조성된 능역 배경숲과 역사경관림 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검토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원·묘는 일반적으로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능역 배경숲 및 역사경관림에 둘러싸인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원·묘의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홍살문, 금천교 등)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능·원·묘는 일반적으로 구릉지에 위치하여 양각과 부각의 적용 등 표고차를 고려하여 진입부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능침공간의 성역성과 권위성, 엄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부에서의 봉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망은 지양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의 조망성은 매장주체와 관람자의 관점(觀點)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능·원·묘는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입지함에 따라, 내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이 조망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내부 조망점은 능침 전면 혼유석(봉분 정면)으로 설정하고, 전면 시야각(좌·우 각 30°, 60° 이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정자각 및 참도 등 경관 상 중요한 조망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고려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능역을 둘러싼 양호한 수림대(능역 배경숲, 역사경관림 등)에 대한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홍살문 또는 봉분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살문 및 금천교 등 주요 조망점에서 능역 후면으로의 조망구간에 해당 문화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주산(主山)의 마루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고, 원지형 유지 및 생태환경 등의 변화를 최소화한다. 능·원·묘의 조경적 특징인 능역 배경숲을 폭 100m 이내의 소나무숲으로 조성함으로써 능·원·묘의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다만, 능역 배경숲의 경계는 지형과 기존 수림대를 고려한다. 또한, 역사경관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경관 유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원·묘의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으로 분절된 배치를 통해 위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능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치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주산(主山), 능역 배경숲, 사신사(四神砂: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등 풍수적 관계를 중시한 입지환경의 보존을 고려한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능·원·묘 주변으로 여타 능·원·묘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관계성을 고려하고,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에는 하나의 능역으로 인식하여 검토한다. 		

(7) 사우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는 제향을 행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대칭성·정면(중심)성이 강조된 공간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적 특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평지 또는 산림지역의 구릉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과 점단위 및 면단위 문화유산이 혼재되어 있는 분포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원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 중 사당만 있는 점단위 문화유산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 중 사당만 있는 점단위 문화유산의 경우,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는 정면성을 중시하므로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외삼문 또는 홍살문, 사당)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는 정면성을 중시하는 배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우의 경역을 명확히 하고, 경역 외부지역 중 제향을 올리는 인물과 관련된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배산임수 등 풍수적 관계를 고려하고, 배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배치특성을 고려한다.

(8) 전통가옥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가옥은 각 지역의 기후 및 풍토 등 자연조건에 순응하여 규모·형태·구조·향 등을 달리하고, 사회계층·경제여건·생산활동 형식 등에 따라 특징적인 형태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전통가옥은 기능에 의한 공간분화, 유교사상에 의한 명확한 공간구분, 풍수적 특징을 고려한 배치를 중시한다. 전통가옥은 도심·농촌·산림 등 다양한 지역 내에 위치하는 점단위 국가유산의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원위치), 왜소화를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주변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을 추가 고려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가옥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한 전통가옥은 인접한 필지에 조성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중점 관리한다.
	조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가옥의 마을 내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진입동선을 주요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외부에서 주 진입부 주요 조망점(문간채 등)으로의 조망구간(내부조망)을 중점 관리한다. 단,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가옥은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 또는 들판을 바라보고 입지함에 따라 내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 또는 들판이 조망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단,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외부의 조망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내부 조망점은 안채, 사랑채, 마당 등 주요 생활공간의 전면으로 설정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전통가옥으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조망대상(대문채, 안채, 사랑채 등)이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구간을 확보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가옥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에서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문화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전통가옥의 마루선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전통가옥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후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 변화를 최소화한다. 단,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루선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9) 민속마을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마을은 기후·풍토 등 자연조건에 순응하고, 조망성 및 풍수적 관계를 중시하며, 자족적 생활권인 동시에 대상별 독자적인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및 산림지역의 평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마을과 더불어 주변 환경권을 포함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마을은 생활(주거)공간, 마을공동공간(기반시설 포함)과 함께 주변 자연경관 요소가 마을영역으로 함께 인식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마을의 진입로는 풍수사상의 전착후관(前窄後寬)에 의해 좁은 출구를 통해 넓은 마을영역으로 진입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영역의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교차로, 광장, 주차장 등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마을영역을 알리는 표식물(당산목, 장승, 마을숲 등)을 연결하는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마을은 마을마다 풍수사상에 따라 독특하게 입지함으로 주요 지점에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내부 조망점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종가 및 정자를 비롯하여 그밖에 관아, 성문, 주요 마을길 등으로 설정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배산임수의 경관구조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가 또는 성문 등 주요 조망대상이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구간을 확보한다.
	마루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마을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종가, 정자, 주요 마을길 등)에서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국가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주산(主山) 등의 마루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민속마을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주변 자연환경요소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경관 유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어우러진 민속마을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민속적 풍경의 보존방안을 검토한다. 민속마을은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주변 산세와 지형조건에 순응하고 마을 내 주택들은 지형조건과 안길 및 물길 등의 방향성과 연계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지형 유지 방안을 검토한다. 민속마을의 경작지는 마을 입지선정에 중요 요인으로 마을 안 들(문전답)과 바깥 들로 구분하여 가치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10) 탑·비·불상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불상은 장소성과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불교유적으로 사찰 및 사지 외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 시대별·지역별 불교문화의 특징과 역사적 사건·사실을 알 수 있는 점단위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원위치), 왜소화를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사지 또는 사찰 내 위치한 경우에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추가 고려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원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불상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탑·비·불상의 위치가 원위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사지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료 고증 및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지의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불상의 경우,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불상은 진입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사찰 또는 사지 경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주 진입동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등에서 탑·비·불상 등으로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시각적으로 일주문에서 불전까지 배열되는 점층 구조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조망점을 설정하고, 산지사찰은 진입부와외의 표고차, 평지사찰은 일주문 등 주요 조망점의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기준을 설정한다. ◦ 단,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탑·비·불상의 경우에는 진입부 주변 경관을 함께 고려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불상은 내·외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탑·비·불상이 사찰 또는 사지 경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경내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주요 조망점은 사찰 또는 사지 내 주요 건축물(지) 등으로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불상은 일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탑·비·불상이 사찰 또는 사지 경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사찰 또는 사지의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일체성을 검토한다.

(11) 민간신앙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집 및 성황당 등은 마을 외곽 구릉지 또는 수림에 둘러싸여 평소 접근이 어려운 반면, 장승 및 입석 등은 마을이나 사찰 입구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위치하여 경계를 표시함과 아울러 잡귀의 출입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하므로 장소성과 상징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점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원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신앙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신앙 관련 국가유산은 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거나, 경계를 표시하고 잡귀의 출입을 막는 등 해당 국가유산의 기능과 역할을 중점 고려한다. ◦ 따라서, 마을 및 옛길과의 관계성, 제단이 위치한 임야 등 당시 인문·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다.

(12) 근대건축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은 시대사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성이 강한 도심형 점 또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인식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원위치, 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진입부)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원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은 경제적 가치에 의한 훼손 또는 이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전여부와 문화유산의 전용(轉用) 및 배치변화 등을 검토한다. ◦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문화유산의 전용(轉用) 및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은 대체로 도시 및 가로 발달에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은 일반적으로 도시 내 위치하여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인접한 공지, 임야, 전·답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내 위치한 근대건축은 가로(街路)구조가 중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 진입 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동선 상의 교통결절점(광장, 교차로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으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예 : 창원 진해우체국) 	

(13)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쟁이나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징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지역(농촌, 산림, 수변 등)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입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전투 및 사건, 인물과 관련하여 후대의 사료를 근거로 발굴·복원된 것이 대부분으로 평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한 면단위 국가유산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지, 인물·사건유적은 역사적 전투 및 사건, 인물과 관련하여 후대의 사료를 근거로 발굴·복원된 것이 대부분으로 고증을 통해 유적의 영역을 검토하는데, 당시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14) 기타건조물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건조물(교량, 굴뚝, 석빙고, 천문, 풍기대, 농기구 등)은 당시 과학·토목기술,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상징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보호)구역이 협소하고, 면단위 문화유산 내에 점단위 문화유산으로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및 구릉 등의 지형적 특성, 옛길과의 관계 등 조성 당시의 인문·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다.

(15) 선사유적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사유적은 역사(歷史) 이전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취락지·패총 등으로 그 당시의 생활양식과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 특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터'의 개념이 반영된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입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사유적은 일반적으로 수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취락지·패총 등과 연계되는 수렵·채취공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한다.

(16) 사지(寺址)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지는 사찰로 운용되다가 폐(廢)한 유적지로 토지와와의 일체성과 지상부에 위치하는 석탑 및 불상 등과의 유기적 관계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매장유산으로서 위치하고, 사역의 범위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진입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세부검토기준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지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매장유산으로 존재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지는 주 진입동선 상의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단, 진입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지는 사찰과 유사하게 불전까지 배열되는 점층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사역 시작부까지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조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지는 사역 내 관련 유적이 위치하는 경우와 매장유산으로서 터만 보존되는 경우로 나누어 내·외부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사지 내 관련 유적(석탑·석등·기단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향(走向)과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내부 조망점을 설정하고, 외부의 능선 및 하천 등으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관련 유적이 노출되지 않고 터만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성기의 규모 및 배치특성을 고려하여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단, 구릉 및 수목으로 차폐되어 외부로의 조망이 어렵거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 조망대상이 훼손된 경우에는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내부 조망점은 건물지·탑·비·불상 등의 전면으로 설정하고,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사지로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지는 건축 당시 또는 번성기를 이루던 당대의 형태가 훼손되어 존치되고 있음에 따라 과거 사찰의 규모 및 관련시설, 건물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사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료조사를 통하여 번성기의 입지특성을 확인하고, 지상부에 위치하는 탑·비·불상 등 관련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17) 고분군 · 지석묘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분군 · 지석묘는 고대 지배층의 유적으로 분류 상 능 · 원 · 묘에서 제외된 개인의 무덤(私墓)을 포함하며, 상징성 및 조망성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농촌 및 산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나, 일부 도시지역 내 평지 또는 구릉지에 입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내 · 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무덤(사묘 및 삼국시대 이후 조성된 분묘 등)은 조망성(내 · 외부) 및 일체성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세부 검토 기준	장소성 입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분군 · 지석묘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群)을 형성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 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석묘 중 군(群)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조망성 내 ·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분군 · 지석묘는 일반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하천 · 능선 · 저평한 지역이 전개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내 · 외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저평한 지역 또는 수계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단,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조망경관이 훼손된 경우에는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내부 조망점은 봉분 또는 지석묘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하천 및 능선 등을 주요 조망대상으로 하여 조성 당시의 조망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고분군의 윤곽선 또는 지석묘를 둘러싼 임야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조망될 수 있는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봉분 또는 지석묘가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구간을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분군 · 지석묘는 일반적으로 군을 이루고, 인접하여 같은 시대의 유적을 공유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위치, 특징, 방향성 등 피장자(被葬者)와의 관계성을 검토한다.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18) 가마터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마터는 재료(물·흙·땀감 등)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경사면에 위치하는 한편, 관리·유통과 관련된 유적을 동반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및 산림지역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유구와 일체화된 지형을 중시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검토기준	장소성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마터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매장유산으로 존재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마터는 지형과 일체화된 유적으로서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형의 보존과 더불어 공방 등 생산 관련 시설, 하천 및 옛길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다. 단,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검토범위를 설정한다.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19) 기타유적지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유적지(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조성된 건물지, 목책시설, 생활유적, 침몰해역 등)는 다양한 유구가 출토되거나 매장유산을 포함하여 토지와 일체성, 지상부에 위치하는 개별 유형문화유산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경역이 명확하지 않고 매장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검토기준	장소성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유적지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매장유산으로서 존재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배경 및 사건에 대한 사료조사를 통해 번성기의 입지특성과 주변에 공존하는 관련유적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20) 자연명승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명승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자연환경의 보존 및 생태적 건전성을 중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 명산·산악·구릉·고원·평원·협곡·폭포·동천(洞天)·대(臺)·해협·곶·하천·하천의 발원지·해안·하안(河岸)·섬·급류·심연·호수·늪·화산·사구·바위·동굴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지점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div> 경역 내에서 이용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시 자연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적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림 및 수변지역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명승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생태환경 훼손이 일어나기 쉽고 진출입시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통경축을 중심으로 가시권의 조망구간(광장, 주차장 등)을 중점 관리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명승은 우수한 경관성과 조망성이 양호한 자연유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역 내·외부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내부 조망점은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곳 또는 외부로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점,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등산로, 체류시간이 긴 휴식공간 등으로 설정한다.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자연명승으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자연유산산으로의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적 특성 및 생태환경 등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미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훼손 방지를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치의 연속성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지형 및 지세, 수계, 수림(樹林)대,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및 연속 경관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단, 주변 자연환경은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자연명승이 수계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예: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21) 역사문화명승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명승은 인공 조형물 또는 자연물이 복합된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역사·문화·인문적 가치 보존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중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園)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명승지 : 정원,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정자, 누(樓), 마을, 도시, 전통유적 등 - 역사·문화·구전(口傳)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div> ○ 경역 내에서 이용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시 자연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적 고려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산림 및 수변지역 내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포함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명승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생태환경 훼손이 일어나기 쉽고 진출입시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통경축을 중심으로 가시권의 조망구간(광장, 주차장 등)을 중점 관리한다.
	조망성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명승은 우수한 경관성과 조망성이 양호한 자연유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역 내·외부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내부 조망점은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곳 또는 외부로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점,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등산로, 체류시간이 긴 휴식공간 등으로 설정한다.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자연명승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요소와 역사·문화·인문적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문화경관의 훼손 방지를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가치의 연속성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지형 및 지세, 수계, 수림(樹林)대,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및 연속 경관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단, 주변 자연환경은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 역사문화명승이 수계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예: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22) 노거수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거수는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민속신앙·전설 등의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노거수의 생물학적 특성과 입지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다양한 지역(도심, 농촌, 산림 등)에 위치하는 점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양호한 생육환경(뿌리생육공간과 일조량 등)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p>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및 시설물, 도로 등에 둘러싸여 발생하는 생태적 고립으로 인한 생육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노거수의 왜소화 방지를 위하여 절대 생육공간과 준 생육공간으로 구분하여 식생환경을 확보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대 생육공간은 수관(樹冠, 나무줄기에 달린 가지 전체) 아래로 하되 수관이 심하게 편중된 때는 뿌리 분포를 고려한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준 생육공간은 절대 생육공간의 바깥쪽이며, 수관 폭 반지름의 2배 이상을 확보하는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div>
	<p>일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거수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및 생육환경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다. 노거수 자체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거수가 갖는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민속신앙과 관련하여 인접한 마을 및 옛길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다. 노거수의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입지여건에 따라 자연 순응지역, 최소 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순응지역은 산림지역 등으로 주변 산림환경에 포함된 지역으로 돌발성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최소 관리지역은 산지·농지·해안·호수·하천변 등의 외딴 지역으로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중점 관리지역은 마을·공원·학교 등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찰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div>

(23) 수림지 · 서식지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림지 · 서식지는 탁월한 학술 · 생태학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동 · 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수종 및 동물종의 생태학적 특성과 입지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농촌 · 산림 · 수변 지역 내의 구릉지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식물종의 뿌리생육공간과 일조량 등을 고려한 식생환경과 동물종의 이동경로, 번식 및 서식을 고려한 생태환경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수림지를 구성하는 수목의 뿌리생육공간 및 서식지의 동물이동로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 도로 등에 둘러싸여 발생하는 생태적 고립으로 인해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수림지 및 주변 지역은 대체로 마을행사 등 다양한 활용으로 인해 답압(踏壓)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뿌리생육공간의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수림지의 왜소화 방지를 위하여 입지여건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처럼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상처치료, 고사지제거 등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수림지 및 난대림 상록수림 : 수림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줄인다. - 광범위하게 산재하는 관목 등 수림지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천연기념물인 하층 관목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숙야줄 수 있다. -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한다. </div>
	<p>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림지를 구성하는 수종별 특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목으로 구성된 수림지는 생육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바닥에는 풀 또는 낙엽 등을 제거하여 후계목(後繼木) 발생을 유도한다. - 특정한 자생식물이 중심인 수림지는 주변 수목과 심한 경합으로 지정 당시와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후계목 생육개선과 지장식물 억제 등으로 관리한다. - 소규모 교목 수림지는 자연 순응과 함께 후계목 발생을 유도한다. - 소규모 관목 군락은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하고, 기존에 교목이 다량 제거된 곳은 잡초가 번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잡목 · 잡초 제거를 실시한다. - 초본류는 자생환경의 보존을 통한 확산을 유도한다. </div> ○ 서식지는 동물종의 산란 · 번식 및 철새 도래지 등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철탑 · 그물(골프장 등) ·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대상 동물종이 먹이 부족과 환경 부적합으로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식환경의 유지방안을 검토한다. ○ 서식지가 수계지역인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 · 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수변 및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 축양동물의 축사 및 관리사 주변 지역은 악성질병(조류독감 · 구제역 등)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p>일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림지는 조성목적과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마을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서식지는 동물종의 번식지, 이동경로 등 직 · 간접적으로 생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림지 · 서식지를 구성하는 수종 및 동물종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및 식생 · 서식환경에 직 · 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다.

(24) 천연보호구역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보호구역은 다양한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적 건전성 확보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경역 내에서 휴식 및 산책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시 노출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관적 고려가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산림 및 수변지역 내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광역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우수한 경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보호구역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생태환경의 훼손이 일어나기 쉬움에 따라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의 진입 시 노출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적·경관적 관계를 고려한다. ○ 천연보호구역은 산세가 험한 산지 및 육지에서 떨어진 섬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나, 주 진입로 상 광장 및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조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경관성 및 조망성이 양호한 자연유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역 내·외부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내부 조망점은 해당 자연유산별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곳 또는 외부로의 시계가 확보되는 지점,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등산로, 선착장 등으로 설정한다.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동·식물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형’은 섬의 출입구인 선착장과 섬의 경관구조 파악이 용이하고 경관성이 우수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설정한다. ○ 육상의 지질·지형, 동식물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을 대상으로 하는 ‘산지형’은 산의 주요 능선, 봉우리가 조망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설정한다. ○ 사계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내륙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습지형’은 습지와 더불어 다양한 생태 구조가 조망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설정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속된 주변 환경의 훼손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특히, 가치의 연속성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단, 산림지역 내에 위치하고 주변 원시림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유도한다. ○ 천연보호구역이 수계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25) 지질·동굴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질·동굴은 지각 형성과 관련되었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지질, 자연현상에 의해 생성된 석회·용암·해식 등 화산활동, 침식 및 퇴적 작용 등에 의해 생성된 동굴 등으로 지질·자연사적 가치의 보존을 중시한다. 산림 또는 수변지역 등 대체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입지특성과 매장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공개동굴에 한해 조망성(진입부)을 추가 고려한다.
세부 검토 기준	조망성 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질·동굴은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공개동굴의 경우에는 진출입시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굴로의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동선 상의 매표소 및 주차장 등으로부터 내부로의 조망구간(내부조망)을 중점 관리한다. 단, 진입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하여 지질·동굴이 발견된 지층이 있거나, 동일 지층·퇴적구조와 연계된 지역에서 지질·동굴의 훼손 또는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구간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질·동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지하수계 포함)의 수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적극 검토한다. 지질·동굴의 주변 지역은 동일 지층·퇴적구조 분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질·동굴과의 관계성 및 매장유산의 유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화석 등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26) 화석산지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산지는 암석이나 지층에 보존된 지질시대의 동·식물 유해 및 유적인 화석의 산출지 또는 분포지로서 고고학과 지질학적 가치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농촌, 산림, 수변지역 등)에 위치하는 입지특성과 매장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세부 검토 기준	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산지는 지표 노출에 의한 풍화 및 파랑에 의한 침식 등의 자연적 훼손과 건설공사 등에 의한 지형변형에 따른 인위적 훼손에 취약하므로 화석산지 보존을 위한 구역 설정을 우선 검토하고, 급격한 환경변화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완충공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화석산지의 주변 지역은 동일 지층 또는 퇴적구조로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해당 화석산지와의 관계성 및 매장유산의 유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